평가시행 중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계획

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

1. 기본원칙

- 가.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,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
- 나.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 하지 않음.
- 다.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.
 - ※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·토론, 화상 발표 등(유형Ⅰ),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(유형Ⅱ)으로 평가 가능(유형Ⅱ: 2021년 모든 교과에 허용)
 - ※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 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, 태도, 참여도,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
- 라. 평가(지필 및 수행평가)의 방법 및 반영비율,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, 형 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¹⁾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
- 마.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, 인정점은 도교육청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의 운영계획 등에 기 준을 정하여 결정함.
- 바.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의거하여 등교중지된 학생의 출결 처리를 위한 증 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.

2. 수행평가

- 가. 수행평가 시기·분량·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(집중 또는 분산)에 안정적으로 운영
- 나.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,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(모둠형 수행평가 등)는 지양하되,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, 방역 강화 등 조치 후 실시
- 다. 코로나19로 인한 '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'방안은 '4. 결시자 성적처리'의 출결처리를 참고하여 교과별 평가계획서의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며, 평가 시행 전 학부 모와 학생에게 안내
- ※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 요망

3. 지필평가

- 가.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년(급)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함.
- 나. 지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완화
- 지필평가 1회 실시 가능 수행평가 최소 반영 비율을 70%에서 40%로 감축함.(시행지침

^{1) (}과목별 수행평가 반영 비율) 20%이상, (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) 60% 이상

1쪽 '방침6'관련) → 학교는 지필평가 1회에 따른 결시자 인정점 문제 등 충분한 고려 필요, 코로나19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평가 기회(시기)를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합 리적일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 참고.

- 고사실 2인 감독 배치 학급당 기준 인원(18명)을 학교 자율 결정 사항으로 함. 즉 학생수가 18명 이상이지만 1인 감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인 감독 배치 가능 → 시험 감독 보조는 학부모로 한정됨. 대학생 봉사활동 등 금지는 유지됨.(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8쪽 '4)' 관련)
-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등 재시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재시험 시행 여부를 판단함. → 학교는 재시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보안관리를 포함하여 지필평가 출제,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(시행지침 '별지15' 관련).
- ※ 시행지침 완화는 학교가 지필평가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임. 지 필평가는 학교장 시행 시험으로 학교는 평가의 공정성, 객관성,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 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.
- 다. 지필평가(정기고사) 시행 중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 회 심의를 거쳐 시험 연기 및 일정 조정
- 라.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2)
 - (1) 발열검사 또는 시험 시행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
 - (2)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대상별 조치 방법
 - (가) 교직원: 바로 귀가 조치
 - (나) 학생: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받 도록 안내
 - * 보호자 연락이 안 되거나,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 료소로 이동

4. 결시자 성적처리: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
가.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

- (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)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- (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)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 - ① (일부 학생 미응시)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 - ② (학급 단위 미응시)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, 불가피할 경우 '일부 학생 미응시'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
 - ③ (학년(교) 단위 미응시)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,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

²⁾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세부 행동 방안은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름.

나.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 증빙자료	인정비율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 22호 서식]	100%
격리 통지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격리통지서	100%
실거주를 같이하는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동거인의 격리통지서	100%
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< 유의사항>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- 다만,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1)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(PCR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, 2)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/ 다만,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	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•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 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 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	100%
	<유의사항>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- 다만, 선제검사(병원·항공 등 직업특성, 대회참여, 이동검체검사 등)의 경우 적용 제 외		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* (임상증상 발현 학생)	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 인 경우]		100%**

- * 임상증상자[®]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,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(1)선별진료소의 검사(진료)결과 와 (2)증상에 대한 의사소견(진단)서[®])를 확인[®]후 등교 허용 가능
 - 1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
 - ②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, **질환명은 반드시 포함**
 - ③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,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·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, 학교장 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
- **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,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
- ※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등교중지 대상임을 증빙한 경우,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 처리함.

다.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비율**
고위험군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 장 판단	100%
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○질병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	80%

		장 판단	
교외체험학습* (가정학습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 출석인정결석	80%
기타결석 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기타 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 장 판단	80%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○미인정 결석	최하점의 차하점

^{*}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

라.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출결	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.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	출석인정결석	질병결석
평가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	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
증빙 자료	예방접종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 증명서	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, 학부모 의견서, 담임교사 확인서 등	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소견서, 진료확인서,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)

- ※ 평가 기간의 경우,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 정결석 처리함
- ※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(수행)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되,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 신 접종과 지필(수행)평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 인정점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
- ※ 위에서 논하지 않은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.